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일본산 암컷 수입 대게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해 동해안 어업인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를 연중 포획 금지 대상으로 하나, 일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암컷 대게의 포획·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수입 개체는 국내산 암컷 대게와는 다른 종이나, 외형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음. 특히 단속 공무원 역시 어종 간 구별이 어려워 현장 단속의 효과가 제한되는 실정으로, 불법으로 어획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상기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획물로서 국내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그 어획물 또는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전환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정착 업종에 대해 선복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조업안전 및 선원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내용

가. 수산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 제한 및 금지 근거
신설 (안 제30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로서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어획물 또는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TAC 정착 업종 대상 선복량 규제 완화 (안 별표 6)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 어종의 어획량이 높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에 대해 선복량 상한을 폐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생관리 및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로서 유통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6 제1호아목 선복량의 한계(총톤수)란 중 “이상 140톤 미만”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선복량의 한계(총톤수)란 및 같은 호 러목 선복량의 한계(총톤수)란 중 “이상 90톤 미만”을 각각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u>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u>) ① 행정관청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30조(<u>위생관리 및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u>)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로서 유통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20